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-12호

「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11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, 다양한 행정수요로 업무 증대에 따라, 반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반장 통신비 지원(안 제17조제3항제3호)
 -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3
- 팩스: 033-640-4070

4. 참고사항

- 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사기진작 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3.</u> (생 략)</p>	<p>제17조(사기진작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</u></p> <p>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